**구매카드 약정 가이드**

**■ 약정 방법 : 주거래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약정**

**■ 삼성SDI 사업자등록번호: 124-81-31282**

|  |  |  |
| --- | --- | --- |
| **금융기관** | **약정상품** | **대표번호** |
| 우리은행 | 상생파트너론(P73) or B2B(09R) | 1588-5000 |
| 기업은행 | 상생결제협력기업서비스, 삼성SDI서비스 | 1566-2566 |
| 씨티은행 | 구매카드 | 1588-7000 |
| KEB하나은행 | E-구매론(E0130) | 1599-1111 |
| 신한은행 | 전자방식외담대 | 1577-8008 |
| 국민은행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 1566-9944 |

**[삼성SDI 제출 서류]**

원본)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 (\* 4페이지 참조)

결제계좌 신고서 (\* 2페이지 참조)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앞표지

구매카드 약정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만 해당)

※보내실 곳: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삼성SDI 재경팀 대금지급 담당자(앞)

☞제출서류 중 결제계좌 신고서,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는 당사/업체 각 1부씩 보관

☞ 구매카드 약정 후 1-2일 뒤 당사 시스템에 약정내용 반영

**[대금 지급기준]**

|  |  |  |
| --- | --- | --- |
| **구분** | **마감기준** | **대금지급일** |
| 중소기업 | 1일 ~ 10일 | 당월 19일 ‘현금’ 지급 |
| 11일 ~ 20일 | 당월 29일 ‘현금’ 지급 |
| 21일 ~ 말일 | 차월 9일 ‘현금’ 지급 |
| 중견기업 | 월 1회 마감 | 차월 29일‘현금’지급 |
| 대기업 | 월 1회마감 | 차월 29일‘어음’발행 후 90일 만기 |
| 계열사 | 월 1회 마감 | 차월 29일‘현금’지급 차월 29일‘어음’발행 후 90일 만기 |

**■ 사업장별 대금지급 담당자**

기흥/수원 사업장 : 안보람 프로 (☎ 031-8006-3558)

구미 사업장 : 지은성 프로 (☎ 054-468-2257)

청주 사업장 : 최초롱 프로 (☎ 043-200-0077)

울산 사업장 : 최소임 프로 (☎ 070-7092-6088)

천안 사업장 : 유신영 프로 (☎ 041-965-1275)

**결제계좌 신고서**

**[협력업체정보]**

|  |  |  |  |  |
| --- | --- | --- | --- | --- |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본점  □지점 |
| 대 표 자 |  |
| 업 태 |  | 종 목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전 화 | ( ) - | 담 당 자 |  | |

위 [협력업체정보]는 반드시 모두 기입 必

**표시□ [우리 상생파트너론 / B2B 은행계좌]**

|  |  |  |  |
| --- | --- | --- | ---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 거래은행 | 우리은행 지점 | 예 금 주 |  |
| 거래은행담당자 |  |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

**표시□ [KEB하나은행 E-구매론 은행계좌]**

|  |  |  |  |
| --- | --- | --- | ---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 거래은행 | KEB하나은행 지점 | 예 금 주 |  |
| 거래은행담당자 |  |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

**표시□ [신한은행 전자방식외담대 은행계좌]**

|  |  |  |  |
| --- | --- | --- | ---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 거래은행 | 신한은행 지점 | 예 금 주 |  |
| 거래은행담당자 |  |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

**표시□ [씨티은행 구매카드 은행계좌]**

|  |  |  |  |
| --- | --- | --- | ---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 거래은행 | 씨티은행 지점 | 예 금 주 |  |
| 거래은행담당자 |  |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

|  |
| --- |
| 당사는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위 은행계좌로 거래할 것을 확약하오며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명 판) (인)법인인감(개인은 개인인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귀중** |

**표시□ [기업은행 상생결제협력기업서비스 은행계좌]**

|  |  |  |  |
| --- | --- | --- | ---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 거래은행 | 기업은행 지점 | 예 금 주 |  |
| 거래은행담당자 |  |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

**표시□ [국민은행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은행계좌]**

|  |  |  |  |
| --- | --- | --- | ---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 거래은행 | 국민은행 지점 | 예 금 주 |  |
| 거래은행담당자 |  | 거래은행담당자 전화번호 | ( ) |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 (이하 "협력회사"라 한다)는 "협력회사"가 "삼성SDI"에게 제공한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본 약정서의 "물품대금"이라 함은 "삼성SDI"에게 제공한 모든 용역과 재화에 대한 대금을 말한다).

제 1조 적용범위

1. "삼성SDI"와 "협력회사"가 체결한 본 약정서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타 약정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협력회사"는 거래 종류 및 금액에 관계없이 "삼성SDI"에게 청구할 물품대금에 관하여서는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제 2조 은행계좌개설 및 서면통보

"협력회사"는 "삼성SDI"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받기 위하여는 "삼성SDI"와 계약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개설 즉시 "결제계좌 신고서(첨부 양식)"를 작성한 후 이를 "삼성SDI"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조 대금의 지급

1. "삼성SDI"는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명세(대금지급액, 결제일, 특정 여신기간 등)를 "금융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단, 결제대금이 "금융기관"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협력회사"는, "삼성SDI"가 제1항의 채권명세를 "금융기관"에 제공한 이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협력회사"가 제 2조에 따라 작성한 결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거나,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 "삼성SDI"의 귀책사유 없이 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삼성SDI"는 제2조 "결제계좌 신고서"에 "협력회사"가 작성한 결제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함으로써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대금지급일자

"구매카드 약정 가이드(첨부 양식)"의 "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 5조 물품 대금 지급 보류 등

1. "삼성SDI"는 "협력회사"가 제2조에서 정한 "결재계좌 신고서" 통보가 없거나 서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협력회사"가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협력회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즉시 "삼성SDI"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력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삼성SDI"의 "협력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해 "협력회사"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이 집행된 경우, "삼성SDI"는 해당 (가)압류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제 3항의 (가)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 "삼성SDI"는 지급 보류한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 또는 취소의 효력발생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삼성SDI"의 정기지급일에 "협력회사"에게 지급한다.
5. "협력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또는 추심,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삼성SDI"가 "협력회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삼성SDI"는 해당금액을 "협력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채권, 채무의 상계

"삼성SDI"는 "협력회사"에게 지급할 물품 대금 중에서 "삼성SDI"가 "협력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 면책

본 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삼성SDI"는 본 약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2.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
3. "협력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협력회사"에게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삼성SDI"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 8조 약정의 변경 및 해지

1. 본 약정은 "삼성SDI"와 "협력회사" 쌍방의 서면 합의 시에는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삼성SDI"와 "협력회사" 중 일방의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그 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약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약정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3. 제 1항의 서면 약정해지 통지로 인한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제 3조에 의거 지급 및 전송한 물품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9조 효력발생

1. 이 약정은 "협력회사" 가 "삼성SDI"에게 제2조에 따른 "결재계좌 신고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상의 각 조항을 "삼성SDI"와 "협력회사"는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삼성SDI" "협력회사" (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윤 호 법인인감(개인은 개인인감)

※ 첨부서류(각 1부) 1. 구매카드 약정 가이드

2. 결제계좌 신고서

3.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결제계좌 통장사본(예금계좌)

6. 구매카드 약정 확인서 사본

7.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만 해당)